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정(안)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2- 206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제정 취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1. 11. 30)되어,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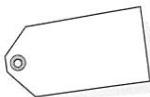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의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제2조 신설)
- 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을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3항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로 규정(제3조 신설)
- 다.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함(제4조 신설)
- 라.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제출, 심사 및 통보 등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및 지원확인 절차를 규정함(제5~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전화번호 : 02-2100-5083, 5082(팩스번호 : 02-2100-5089)
 - 이메일 : pahayong@korea.kr
-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4조제1항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을 원하는 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으로 적절하게 내진보강 되었는지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的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 ② 제1항제1호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 ③ 제1항제2호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으로 적절하게 내진보강 되었는지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 결과 내진성능이 만족하여 내진보강이 완료되었다고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까지로 한다.

부 칙(2012. 9.)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